

---

## 무연분묘의 개장 및 보상절차

---

### 1 질의

- 가. 무연분묘는 보상액 산정 후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?
- 나. 무연분묘는 개장, 화장이나 봉안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된 보상액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는지?
- 다. 위의 경우 봉안 후 연고자가 나타나면 그 보상액 지급방법 등은?

### 2 회신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토지보상법”이라 함)  
시행규칙」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 
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, 석물이전비, 잡비 및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 
산정하도록 하고 있고,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  
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 
산정하도록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무연분묘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보상 범위 안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「장사  
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, 무연분묘 처리 이후 연  
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액에서 이미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 
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며,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  
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. 【2012.5.15. 토지정책과-2350】